

글로벌사업규정 전부개정(안)

1. 제안사유

합작법인 설립 등 해외투자사업 본격화에 따른 대내외 업무추진 환경을 반영하고 신규 업무에 대한 추진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 및 정비

2. 주요골자

가. 글로벌사업 관련 사규 체계 개편

- 규정의 장·절을 사업추진 프로세스에 따라 체계적으로 개편하여 직원이 이해하기 쉽도록 함(종전 5장 33조 → 6장 43조로 정비)
- 일반사항(안 제2장)을 신설하고 사업추진 절차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조문을 하위로 이동 배치(종전 제4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 보칙(종전 제5장)을 삭제하고 보칙의 하위 조문(종전 제32조, 제33조)을 신설한 일반사항(안 제2장)으로 이동

나. 해외지사 설치 및 운영 관련 조항 신설

- 해외지사 설립, 운영, 업무수행, 예산계획 수립, 자금의 집행, 자금 집행 및 정산, 결산, 사무실 임차, 현지직원 고용, 해외지사 청산 관련 조항 신설(안 제6장, 안 제35조~43조)

다. 기존 위원회를 통합한 글로벌사업 자문위원회 관련 조항 신설

- 글로벌사업 「리스크관리위원회」, 「후보지선정 심의위원회」 및 「글로벌사업 전략기획위원회」의 주요 기능을 통합한 「글로벌사업 자문위원회」 관련 조항 신설(안 제5장)
- 글로벌사업 자문위원회의 설치, 구성, 기능, 운영, 회의록 작성, 비밀유지의무,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장, 제28조~34조)

라. 현지법인 설립 및 사업관리 관련 조항 신설

- 현지법인에 대한 자본금출자 및 합작계약서 체결(안 제23조), 현지법인을 통한 사업관리에 대한 조항(안 제24조) 신설

마. 기타

- 해외사업 명칭을 글로벌사업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해외사업 규정에서 글로벌사업규정으로 규정 명칭 변경(안 제1조)
- 사내 유관부서를 포함한 실무자문단 설치 관련 조항 신설(안 제8조)
- 타기관 발주 해외사업 입찰 참여를 위한 외부기관과의 컨소시엄 구성시 구성원 선정 기준조항 신설(안 제17조 3항)

글로벌사업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한다.

글로벌사업규정 전부개정(안)

제정 2009.10.01 규정 제36호
개정 2011.07.28 규정 제67호
개정 2014.09.25 규정 제119호
개정 2018.03.26 규정 제175호
전부개정 2022.00.00 규정 제00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외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글로벌사업”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 및 「해외건설촉진법」 제17조의 2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해외국가 및 해외기업 등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사업과 해당사업에 관련된 용역 및 자문 등을 말한다.
2. “현지국가”란 공사가 사업을 진행(검토, 예정, 착수, 준공, 관리·운영 단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있는 사업대상국을 말한다.
3. “사업비”란 사업에 소요되는 용지비 및 조성비, 건축비, 운영비 등 해당 사업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투입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4. “글로벌사업주관부서장”(이하 “주관부서장”이라 한다)이란 제2조 1호에 따른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5. “해외지사”란 사업수행을 위하여 현지국가에 설치된 현지법인(합작법인은 제외), 현지지사, 대표사무소 등을 말한다. 현지법인은 법적으로 독자적인 법인격을 가지며, 현지지사, 대표사무소 등은 독자적으로 법인격을 가지지 않는다.
 6. “협약 등”이란 글로벌사업 수행을 위하여 현지국가의 정부, 국내외 공공기관 또는 기업체 등 법인이나 개인과 체결하는 추상적·포괄적 내용으로 구성된 양해각서(MOU), 합작계약서(JVA), 합의각서(MOA)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서면합의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특례) 현지국가의 제도 및 여건 등이 상이하하여 이 규정을 적용함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주관부서장은 합리적인 범위에서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장 일반사항

제4조(사업구분) 글로벌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투자형사업이란 공사가 현지국가에 직접 사업비를 투자하거나 현지법인에 자본금을 출자하여 참여하는 방식의 사업을 말한다.
2. 비투자형사업이란 공사가 현지국가에 직접 사업비를 투자하지 않고 참여하는 방식의 사업을 말한다.
3. 수주형사업이란 제1호에 따른 투자형사업 이전단계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업 중 현지국가의 정부, 국내외 공공기관 또는 기업체 등에서 발주하는

용역을 직접수행 또는 감독 등으로 참여하는 방식의 사업을 말한다.

제5조(관련기관 등과의 협조체제 마련) 공사는 사업의 활성화 및 효율적 사업추진을 하고자 현지국가 및 관련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공사초청 연수 등 상호간 인적교류 증진방안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6조(에이전트 등 활용) 주관부서장은 특정사업에 대한 정보수집, 현지조사 등 사업준비, 계약협상 및 체결 등 사업참여, 사업수행, 사업종료 등에 필요한 경우 에이전트를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용역 및 자문) 주관부서장은 제5조의 정보수집, 제6조의 현지조사, 제7조의 사업예비타당성 검토, 제11조제2항의 사업계획 수립, 제15조제1항의 계약조건 검토 및 위시리스트(Wish-List) 활용, 제16조의 해외지사 등의 설립, 제23조 해외지사 등의 청산 등에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및 전문기관 등에 용역이나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실무자문단) ① 주관부서장은 사업의 발굴 및 타당성검토 과정에서 최적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분야별 사내 유관부서를 포함한 실무자문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제29조4항에 글로벌사업 자문위원회 구성범위를 준용하여 전문분야별 관련부서의 유관업무 담당 부장 및 차장급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자문단은 타당성조사용역의 착수·중간·준공보고회 참석 및 사업현안사항에 대한 수시자문 통하여 분야별 검토내용 검증 및 사업여건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제9조(해외근무직원 파견) 공사는 현지국가에서 사전조사, 국제입찰, 계약체결, 인·허가 협의, 사업관리 등의 해외업무 수행을 위하여 직원을 해외에 파견할 수 있다.

제10조(글로벌사업 역량 강화) ① 주관부서장은 지속적인 글로벌사업 추진을 위하여 글로벌사업 유경험자, 해외교육 연수과정 이수자 및 외국어 능력이 우수한 자 등을 위주로 해외전문인력군을 구성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글로벌전문인력군의 역량개발을 위하여 교육프로그램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장은 특정사업에 대한 정보수집, 현지조사 등 사업준비, 계약협상 및 체결 등 사업참여, 사업종료 등에 필요할 경우 인사담당부서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글로벌전문인력군 내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제3장 사업준비

제11조(정보수집) 주관부서장은 글로벌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국내외 공관 등 유관기관, 그 밖의 방법 등을 통하여 사업추진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제12조(현지조사) ① 주관부서장은 제5조에 따라 수집된 정보 등의 확인, 추가적인 자료입수 및 사업타당성 검토 등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현지조사 시 현지국가의 법률 및 세제 등의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국가의 사정에 정통한 국내 또는 현지법인 등과 동행조사를 할 수 있다.

제13조(후보지선정) 주관부서장은 제11조 및 12조에 따라 사업타당성조사 등 후속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사업을 후보지로 선정할 수 있다. 이때,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위해 글로벌사업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협약 등의 체결) ① 글로벌사업 관련 협약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별지 제6호의 서식에 따라 법무실의 검토, 법률·계약 전문가 등 2명 이상의 글로벌사업 자문위원회 외부위원 또는 그에 준하는 외부전문가의 자문 및 감사실의 일상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 해외 법규 또는 언어 등의 특수성으로 인해 법무실의 검토가 어려울 경우 사내 해외변호사 또는 외부 해외변호사 1명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체결하고자 하는 협약이 「감사기준 시행세칙」에 따른 일상감사의 범위에 해당 하지 않는 경우 감사실의 일상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사업예비타당성 검토) 투자형사업의 경우 주관부서장은 제12조에 따른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투자여건 및 예상수익률 분석 등을 통한 사업예비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제28조에 의한 글로벌사업 자문위원회 자문 및 검증절차와 통합하여 예비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다.

제16조(사업계획 수립) ① 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사업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사 설립목적과의 부합 여부
2. 사업의 수행에 따른 리스크 분석
3. 사업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투자규모의 적정성 및 기대효과
4. 단독투자, 컨소시엄 참여 또는 지분투자 등 사업참여방안에 관한 계획
5. 사업의 관리 및 운영계획
6. 사업투자비 산출내역
7. 사업 실행예산 등 재원조달 방안
8. 인력투입계획 및 업무분장
9. 연도별 사업계획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주관부서장은 제1항제7호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마련시 예산담당부서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컨소시엄 구성 등) ① 주관부서장은 사업실적, 기술능력 및 재정능력 등 사업수행에 요구되는 사항에 부합되는 입찰경쟁력을 확보하거나 사업의 성격·규모 등에 적합한 파트너 선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외 업체 등과 컨소시엄, 합작회사 등(이하 “컨소시엄 등”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1. 현지국가 또는 인근 국가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동종 프로젝트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업체
2. 현지어에 능통한 인력과 프로젝트의 기획, 설계 및 시공 등 해당 분야에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3. 현지에 법인 또는 지사가 설치되어 있는 업체
4. 그 밖에 사업참여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 업체로서 사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

② 주관부서장은 제1항의 컨소시엄 등을 구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구성원 간의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1. 사업개요 및 목적
2. 컨소시엄 등의 성격 및 주관사
3. 컨소시엄 등의 구성원 간 업무범위, 책임범위 등에 관한 사항
4. 수익분배방식 및 소요비용 정산에 관한 사항
5. 기밀유지에 관한 사항
6.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타 기관에서 발주한 글로벌사업의 입찰 등을 위해 국내 민간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 주관부서장은 컨소시엄사 선정에 위한 제안서 평가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를 위한 선정평가지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제안서 양식 및 평가기준을 발주기관의 본입찰 기준으로 일원화
2. 평가위원의 구성은 일반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준용
3. 그 밖에 주관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사업 타당성검증 등) 주관부서장은 제4조의 글로벌사업에 대한 사업 타당성 등의 검증을 위하여 제28조 규정에 의한 글로벌사업 자문위원회의 검토 및 자문절차를 거치되, 투자형사업의 경우 투자의사결정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

제4장 사업수행

제19조(입찰) ① 주관부서장은 발주자로부터 입찰초청서가 도달하거나 국제 입찰이 공고되면 입찰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입찰 운영절차 및 세부심사기준, 입찰관련 필요서류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점검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장은 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 입찰제안서를 제출할 때는 미리 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주관부서장은 제17조에 따라 컨소시엄 등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입찰참여 등에 소요된 경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20조(계약체결 등) ① 주관부서장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계약

조건 등 법률적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공사와 현지기관간의 사업추진에 따른 협의 등에서 상호간의 제시조건 또는 사업추진 과정상의 협사항목 등의 위시리스트(Wish-List)를 작성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조건 등의 검토가 필요할 때는 계약담당부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계약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사장의 승인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내용 및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미리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인허가 등) 주관부서장은 현지국가의 법령이나 제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착수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제22조(조사설계 등의 시행)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조사설계 및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입찰 등의 방법으로 한다.

제23조(현지법인 설립)

① 공사는 투자 의사 결정이 완료된 경우 투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현지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제1항으로 설립된 법인에 자본금을 출자할 수 있다. 이 때, 사업의 자금조달 여건 상 필요한 경우 해당 법인의 자본금에 제3자와 공동으로 출자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제2항에 따라 제3자와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출자금의 규모 및 비율, 출자자 간 역할·책임·권리, 수익배분 및 기타 상호간에 합의한 조건 등을 규정하기 위해 공동출자자와 합작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제24조(사업관리)

① 주관부서장은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현지 법인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현지 법인이 공사의 출자 목적에 맞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총 사업비, 예산 및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단일업무 기준 1억원 이상의 자금집행 계획에 관한 사항 (인건비, 세금 및 월정액의 고정경비 제외)

나. 10억원 이상의 공사 및 1억원 이상의 용역 발주에 관한 사항

다. 공사·용역의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10% 이상 증액되는 경우)

라. 공급단가 결정 및 공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기타 합작계약서 및 현지 법인의 정관에 따라 주주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

② 주관부서장은 현지 법인이 300억원 이상의 공사 또는 10억원 이상의 설계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해당 공사·용역의 입찰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입찰·심사기준을 검토할 수 있다. 이 때, 주관부서장은 한국 기업의 수주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장은 현지 법인이 산업용지·물류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지가 한국 기업에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장은 제23조에 따른 합작계약서 체결 및 현지법인의 정관 수립 시 제2항 및 제3항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 법령에 따라 반영이 불가하거나 주주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여건에 따라 달리 조치할 수 있다.

⑤ 공사는 현지 법인 및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합작계약서 및 현지 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사의 직원을 현지 법인에 파견하거나 현지 법인의 직원 채용을 추천할 수 있다.

제25조(시공평가) 공사는 해외사업의 기술수준향상과 품질확보를 위하여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방법으로 시공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조성용지 및 주택의 공급) 공사는 인허가 또는 계약 등에서 정한 토지이용계획, 공급조건 등에 따라 조성용지 및 주택 등을 공급한다. 이 경우 공급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27조(준공확인 등) 해당 사업의 주관부서장은 준공시점에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발주자에 대한 준공사실 통지 및 준공확인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최종확인 절차가 완료되면 그 사실을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글로벌사업 자문위원회

제28조(설치) 주관부서장은 글로벌사업 추진에 따른 후보지선정, 투자타당성에 대한 심층적 검토 및 검증을 위해 글로벌사업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9조(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17명 이내의 위원장, 내부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내부위원 및 외부위원은 동수로 한다.

② 위원장은 주관부서장이 되고, 자문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자문안을 부의한 글로벌사업주관부서 담당부장을 간사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④ 내부위원은 위원장이 예산담당부장, 사업심의담당부장, 계획·개발·설계 담당부장, 재무담당부장, 부동산금융담당부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⑤ 외부위원은 위원장이 해외건설사업 관련 시공(건축, 토목, 도시계획, 조경), 법률, 금융, 기타(행정, 마케팅, 문화) 분야의 전문가를 사전에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 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며, 재위촉할 수 있다.

⑥ 자문위원회 개최시 외부위원은 위원장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위촉한 분야별 전문가 중 선정한다. 이 경우 동일 분야의 위원들로만 구성할 수 없으며, 필요 분야의 전문가가 없는 경우 주관부서장이 이에 준하는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30조(기능) ① 자문위원회는 제18조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자문을 제공한다.

1. 타당성조사 이전에 후보지검토를 위한 사업개요, 사업대상지 현황, 개발여건, 사업계획의 적절성, 공동투자사 현황, 타당성조사 시행계획, 사업안정성 등에 관한 사항

2. 경영투자심사 이전에 사업타당성검토를 위한 사업개요, 입지 및 개발여건, 시장 및 수요여건, 사업계획, 사업구조·자금조달계획, 재무적 타당성, 기회 및 위험분석 및 국가·환율·금리 등에 따른 투자위험관리 기본계획(Contingency Plan)에 관한 사항

3. 공사발주 이전에 사업타당성 검증을 위한 사업개요, 공사여건중심의 개발여건, 시장여건, 실시설계 결과를 포함한 사업계획, 사업구조·자금조달계획, 투자계획, 공급회수계획, 재무적 타당성, 기회 및 위험분석, 공사발주계획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1조(운영)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개최 3일전까지 회의일

정과 심의안건을 미리 위원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글로벌사업 자문위원회 출석안내서에 따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출석을 원칙으로 하고, 대리참석은 불허한다. 단, 부득이한 상황시 비대면회의(영상회의)형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사업의 성격상 대외보안 또는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거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로 서면검토 하거나 글로벌사업담당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자문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제32조(회의록 작성) 자문위원회 열린 경우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자문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33조(비밀유지의무) ①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은 자문안건 및 그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4조(수당지급) ① 위원장 후보지선정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수당에 관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6장 해외지사

제35조(해외지사의 설립) ① 주관부서장은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외지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외지사가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른 자회사 등에 해당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해외지사를 설립하는 경우 주관부서장은 「해외건설촉진법」 및 「외국환거래법」 등의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6조(해외지사 운영) ① 해외지사장은 2급 직위이상 직원을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주관부서장이 3급 이하 직원을 지사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해외지사의 운영에 관한 권한과 책임은 해외지사장에게 있다.

③ 해외지사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표의 위임전결사항에 따른다.

제37조(업무 수행) ① 해외지사장은 다음년도 지사의 연간 업무계획을 수립 후 해당연도 12월 말까지 주관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장은 현안 등 발생 시 별도로 업무현황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본사 귀임 등 사유로 인하여 해외지사장과 해외근무직원의 소관 업무가 바뀌는 경우 업무인수인계서를 문서로 작성하여야 하며, 인수인계 기간은 2개월 이내로 한다.

④ 해외지사장은 해외지사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기별로 익월 10일까지 주관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임차사무소 운영현황

2. 임차숙소 운영현황

3. 임차차량 운영현황

4. 현지직원 채용현황

제38조(예산계획 수립) ① 해외지사장은 다음년도 예산계획을 수립하여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년도 예산계획의 제출 시기 및 예산편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사의 예산편성기준을 따르며, 상세기준은 주관부서장과 예산담당부서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

제39조(자금집행 및 정산) ① 해외지사는 분기 단위로 필요한 자금을 본사에 배정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해외지사의 모든 자금은 은행에 예탁관리하여야 하며, 현금 보관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 해 최소 규모로 한다.

③ 해외지사의 모든 자금은 은행계좌이체 또는 법인카드를 통한 집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어 현금으로 집행할 수 있다.

제40조(결산) ① 전도금은 미화를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하며, 미화 이외 현지화로 지출한 경우 서울외국환중개회사의 최종 기준 월평균매매기준율(월평균매매기준율이 없을 경우 월말 기준 비고시환율)에 따라 환산한 미화를 정산액으로 한다.

제41조(사무실 임차) 현지에서 사무실을 임차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주관부서장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건물의 위치, 구조 및 규모 등에 관한 설명서 및 다각도 사진

② 임차 건물의 적합성에 대한 의견서

③ 계약서안

④ 중개수수료 등 부대경비 지급에 관한 증빙서류

제42조(현지직원 고용) ① 해외지사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현지에서 직원을 고용할 수 있다.

② 현지직원의 고용 계약 시 국내 및 현지 관련법규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현지직원의 고용기간, 복무규율, 근무시간, 휴가, 급여, 퇴직금 등 고용조건을 고용계약서에 규정하여야 한다.

③ 해외지사장은 현지직원의 고용 및 퇴직 시 주관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해외지사의 청산) ① 주관부서장은 사업이 종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해외지사가 설립목적 달성이었거나 불필요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청산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이 종료된 후 잔여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해외지사의 규

모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사업의 종결 및 이관에 관한 사항
2.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해외지사의 청산, 폐쇄에 관한 사항
4. 기타 사업종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주관부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 및 내용 등을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해외지사장은 제1항에 따라 철수할 경우 잔여재산 등은 사전에 본국으로 송금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의 경우 해외지사장은 외국환거래법과 외국환거래규정 등에 따른 신고기관에 신고 등 청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글로벌사업 자문위원회 출석안내서

수 신 :

년도 제 회 글로벌사업 자문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년 월 일 시

2. 장 소 :

3. 안 건 :

가.

나.

년 월 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글로벌사업 자문위원회

위 원 장 인

[별지 제2호서식] (제31조제3항 관련)

의견서
글로벌사업 자문위원회

안건 :

위원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검토 및 자문의견

[별지 제3호서식] (제32조 관련)

글로벌사업 자문위원회 관리대장

회의차수	일자	의안번호	건명	제안부서	심의내용	비고

[별지 제4호서식] (제32조 관련)

(제 회)

글로벌사업 자문위원회 회의록

(년 월 일)

일 시 : 년 월 일()

장 소 :

총 위원수 : 인

출석위원수 : 인

위 원 장 :

위원장의 년도 제 회 글로벌사업 자문위원회 개최선언 및 제안 설명으로 아래와 같이 회의를 개최하고 산회한다.

회 의 목 록 표

의 안 번 호		제 안 부 서	
건 명 :			
주요의견 :			

년 월 일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위 원 장

위 원

위 원

...

서 약 서

본인은 글로벌사업 자문위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글로벌사업 자문위원 기간 중 알게 된 국가 또는 공사의 업무와 관련한 기밀을 일체 누설하지 아니할 것이며
-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사규에 따른 징계 등 어떠한 조치를 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성 명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 하

글로벌사업 협약서 등 체결 자문의견서

자문의뢰 건명	
자문 의뢰인	

☐ 협약서 등 체결안의 적정성 판단

① 협약서 등을 체결하려는 취지를 잘 반영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가?	적정	부적정
② 관계 당사국 법규위반, 정치적/종교적/윤리적/문화적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작성되었는가?	적정	부적정
③ 관계 당사국에서 불공정성, 부패, 특혜 등의 논란을 야기하거나 관련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없도록 적정하게 작성되었는가?	적정	부적정
④ 적용시 분쟁 발생 가능성이 없고 분쟁 발생시 신속·명확히 해결이 가능하도록 적정하게 작성되었는가?	적정	부적정
⑤ 불필요하거나 오해소지가 있는 문구나 용어 등이 없도록 적정하게 작성되었는가?	적정	부적정

☐ 위 “부적정” 의견 제시 이유

☐ 기타 자문의견

[제출일] 20 년 _____ 월 _____ 일

[제출자]

성 명 :

(인)

[별표]

해외지사 위임전결사항

구 분	업 무 내 용	전결권자			사 장
		지사장	부서장	본부장	
공통 사항	1. 해외 지사의 설립				
	가. 대표사무소의 설립			○	
	나. 현지지사의 설립				○
	다. 현지법인의 설립				○
	2. 해외지사장의 임명				
	가. 2급 직위 이상				○
	나. 3급 직위 이하		○		
	3.지사 업무계획 및 예산				
	가. 연도별 지사 업무 계획 및 예산(안) 편성	○			
	나. 연도별 지사 업무 계획 및 예산 확정		○		
	4. 해외지사 조직관리 및 업무분장	○			
	5. 업무인수인계				
	가. 해외지사장		○		
	나. 직원	○			
	6. 해외지사의 청산				
	가. 대표사무소의 청산			○	
	나. 현지지사의 청산				○
	다. 현지법인의 청산				○
서무 및 자산 관리	1. 인장관리	○			
	2. 방화, 안전관리	○			
	3. 사무실 임차		○		
	4. 비품관리	○			
	5. 차량 관리	○			
인사	1. 현지직원 고용 및 해고 등 복무관리	○	보고		
	2. 현지직원 업무실적평가	○			
재무	1. 분기별 회계현황 및 집행내역 보고	○			
	2. 자금관리	○			
	3. 예금인출	○			
	4. 현금출납	○			
	5. 비용 수반 회의 개최(업무추진비, 잡비 사용 시)				
	가. 1건당 30만원 이상		○		
	나. 1건당 30만원 미만	○			

* 미기재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위임전결규정 시행세칙」에 의함